

## 총동문회

- 연혁
- 역대 총동문회장 명단
- 제33대 총동문회 임원 명단
- 단과대학 동문회장 명단
- 총동문회 지회 회장 명단
- (재)숙명여자대학교 동문장학회 이사 명단
- 숙명여자대학교 총동문회 회칙

### 연혁

모교와 더불어 성장해 온 총동문회는 1940년 3월 숙명여자전문학교로 제1회 졸업생 42명을 배출하면서 발족하였다. 당시는 일제하로서 일본인 학생과 함께 졸업하여 첫 동문회의 초대 회장은 유감스럽게도 일본인 회장이었다. 해방 후 1946년에 이르러 한국인 회장이 선임되어 정치적사회적으로 우여곡절을 겪으며 발전을 거듭하여, 2023년 1월 현재 11만여 명의 동문을 회원으로 하고 있다.

현재 33대 총동문회에는 9개 단과대학 동문회와 국내 14개(강릉, 광주, 구미, 대구, 부산, 울산, 원주, 전주, 진주, 제주, 창원, 청주, 충주, 포항)지회, 52개의 서클동문회가 설치되어 긴밀한 유대로 맹활약하고 있다. 국외로는 미주지역 동문회를 중심으로 미국에 14개 (남·북가주, 중서부, 뉴욕, 워싱턴D.C, 오리건, 조지아, 하와이, 콜로라도, 텍사스, 미시간, 필라델피아, 라스베가스, 뉴저지), 캐나다에 2개(토론토, 벤쿠버), 호주에 2개(시드니, 브리스번),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프랑스, 독일,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상해 등 총 25개 지부를 두고 세계 속의 숙명으로 활약하고 있다.

### 역대 총동문회장 명단

구분	성명	비고	구분	성명	비고
1대	송본수미	일본인	21대	문 계	국문 65년
2대	정진수	기예 41년	22대	정정애	사학 66년
3대	이상희	가정 41년	23대	정정애	사학 66년
4대	한영희	가정 41년	24대	정춘희	영문 66년
5대	이상희	가정 41년	25대	정춘희	영문 66년
6대	이옥순	가정 41년	26대	황현숙	정외 70년
7대	최정신	기예 41년	27대	류지영	생미 72년
8대	유유정	가정 42년	28대	정순옥	화학 73년
9대	김경진	가정 42년	29대	정순옥	화학 73년
회장서리	노정숙	기예 42년	30대	정순옥	화학 73년
10대	김명희	국문 52년	31대	김종희	제약 80년
11대	김명희	국문 52년	32대	김순례	제약 78년
12대	김명희	국문 52년	33대	김경희	체교 83년
13대	전금주	영문 54년			
14대	전금주	영문 54년			
15대	원효경	경제 58년			
16대	원효경	경제 58년			
17대	이상숙	가정 61년			
18대	이상숙	가정 61년			
19대	이상숙	가정 61년			
20대	문계	국문 65년			

## 제33대 총동문회 임원 명단

구분	성명	비고
회장	김 경희	체교 83년
부회장	이 미화	아복 83년
부회장	이 민아	교육 90년
부회장	송 정희	교육 93년
총무	양 영아	아복 93년
총무	오 지영	화학 96년
재무	이 수현	경제 02년
재무	민 아영	경제 14년
홍보	윤 수희	회화 92년
홍보	고은정	경영 05년
서기	김 동희	영문 94년
서기	이상희	영문 14년
대외이사	김효정	체교 98년
대외이사	정수연	국문 01년
감사	손경숙	영문 83년
감사	류미희	화학 85년

## 단과대학 동문회장 명단

구분	성명	비고
문과대학	김혜숙	교육 77년
이과대학	이영순	회학 79년
생활과학	박미경	의류 82년
사회과학	김정혜	정외 74년
법과대학	박정자	법학 86년
경상대학	노명희	경제 83년
음악대학	이해원	성악 79년
약학대학	허인영	제약 84년
미술대학	이영수	산미 81년

## 총동문회 지회 회장 명단

### – 지방지회

구분	성명	비고
강릉지회	권오재	식영 73년
광주지회	신록	무역 87년
구미지회	정영자	정외 68년
대구지회	김영미	사학 86년
부산지회	홍미원	의류 83년
울산지회	김영숙	독문 79년
원주지회	송영진	가관 72년
전주지회	노명희	가관 71년
제주지회	박근화	식영 87년
진주지회	이인숙	교육 76년
창원지회	이양광	가정 63년
청주지회	이경실	의류 81년
충주지회	이영순	경영 74년
포항지회	박해자	경영 82년

- 해외지회

구분		성명	비고
미주지역 총동문회	회장	이정희	식영 71년
	이사장	최환숙	교육 54년
글로벌 숙명재단 SMAIF	이사장	이현순	정외 83년
	회계	유은희	국문 88년
	감사	이미섭	식영 83년
미국	북가주지회	이재순	성악 78년
	중서부지회	조정순	약학 70년
	남가주지회	안유경	국문 84년
	뉴욕지회	이효우	불문 76년
	워싱턴DC지회	이정희	식영 71년
	오리건지회	윤기순	생물 82년
	조지아지회	강은경	영문 85년
	하와이지회	장희정	약학 65년
	콜로라도지회	손순희	정외 73년
	텍사스지회	심지수	영문 87년
	미시건지회	최승원	화학 88년
	필라델피아지회	이경욱	작곡 84년
	拉斯베가스	주인숙	화학 82년
	뉴저지지회	강은주	무용 89년
캐나다	토론토지회	정희경	피아노 85년
	벤쿠버지회	오경순	산미 81년
호주	시드니지회	권순화	수학 83년
	브리스번지회	임현경	사학 80년
뉴질랜드	오클랜드지회	안정애	아복 80년
일본		신혜숙	생미 72년
프랑스		조혜인	경제 06년
독일		오명선	산공 83년
싱가포르		서보희	통계 95년
인도네시아		고혜숙	중문 78년
상해		양승자	한사 91년

(재)숙명여자대학교 동문장학회 이사 명단

구분	성명	비고
이사장	김경희	체교 83년
이사	이인복	국문 60년
이사	윤명숙	성악 72년
이사	정순옥	화학 73년
이사	박원경	중문 78년
이사	김영혜	수학 79년
이사	전효영	제약 88년
감사	동을원	약학 76년
감사	김명림	무역 80년

# 숙명여자대학교 총동문회 회칙

##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숙명여자대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동문 모교간의 친화를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단 필요에 따라 산하조직을 위한 지회 사무소를 다른 곳에 둘 수 있다.

### 제4조 (산하조직)

1. 본 회는 산하조직으로 기별·과별 동문회로 구성된 각 단과대학 동문회 및 각 대학원 동문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지역별 국내외 지회 및 직능별 분회를 둘 수 있다.

2. 조직의 유대를 견고히 하기 위하여 각 단과대학 동문회장, 각 대학원 동문회장 및 지회장은 본 회의 상임이사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각 단과대학 동문회, 각 대학원 동문회 및 지회·분회는 본 회 회칙에 준하여 각기 필요한 규정을 둘 수 있다.

4. 본 회는 본 회 목적 사업을 위하여 각종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서 간행물 출간

2.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사업

3. 장학사업 및 모교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4. 그 밖에 본 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5. 본 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수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① 휴게음식점

##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 본 회는 정회원·준회원·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회원으로 한다.

1. 모교의 학부 또는 전문부 졸업자 및 정규과정 수료자

2. 모교 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제8조 (준회원) 준회원은 다음 회원으로 한다.

1. 모교를 중퇴한 자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2. 모교 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의 정규과정 수료자

3. 모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 학사

4. 모교 부설교육기관의 정규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9조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다음 사람 중 본 회가 추천한 자로 한다.

1. 모교 및 모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 및 감사

2. 모교의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

3. 모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

4. 본 회 또는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어 본 회가 추천한 자

제10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정회원 및 준회원은 선거권과 의결권이 있으며,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제3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두되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홍보, 서기, 대외이사는 상임 임원으로 한다.

1. 회장 1명, 부회장 5명 이내

2. 총무 2명, 재무 2명, 홍보 2명, 서기 2명, 대외 2명

3. 상임이사 300명 이내

4. 이사 전체 회원의 2% 이내

5. 감사 2명

제12조 (회장)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 전반을 통괄하고 각급회의의 의장이 되며 가부 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13조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직무대행의 순위는 졸업년도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회장의 지명이 있는 경우에는 지명에 따른다.

제14조 (총무)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지휘에 따라 회무전반에 걸쳐 집행·처리한다.

제15조 (재무) 재무는 재무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총무를 경유하여 회장의 결재를 받는다.

제16조 (홍보) 홍보는 대내외 홍보·섭외·문화 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제17조 (서기) 서기는 회무에 관한 모든 기록을 관장·관리한다.

제18조 (대외) 대외는 전반적인 인적자원의 관리 및 섭외를 관장한다.

제19조 (상임이사)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비 납부 의무가 있으며,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제28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20조 (감사) 감사는 본 회의 회무서류 및 수입·지출 대장 및 결산서 등을 수시 또는 정기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 한다.

제21조 (임원의 선임과 임기)

1. 상임임원은 학부(전신 포함)를 졸업한 정회원 중에서 선임하되 회장·부회장·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총무, 재무, 홍보, 서기, 대외는 회장단이 합의하여 이를 임명한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차기 회장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전항에 불구하고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체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하여 더 연임할 수 있다.

3. 상임이사는 각 단과대학 동문회장 및 각 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상임임원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4. 이사는 각 단과대학 동문회장의 추천을 받고 상임임원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5. 보궐선거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

6.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모교 총장 후보 선거권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22조 (명예회장) 명예회장에는 모교 총장을 추대한다.

제23조 (고문) 본 회에는 고문을 둘 수 있다.

1. 고문은 회장이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 또는 위촉한다.

2. 고문은 본 회의 임원회와 상임이사회의 자문에 응한다.

## 제4장 회의

제24조 (회의) 본 회는 총회·상임이사회·임원회를 둔다.

제25조 (총회)

1. 총회는 정기 및 임시 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3월중에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이사의 과반 수 이상의 의결이 있을 때 또는 회원 200명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은 3주 이내에 이를 소집한다. 단, 위 서면 요청할 수 있는 회원은 서면요청이 있는 해로부터 이전 3년 동안 본 회 회비를 모두 납부한 자여야 한다.

4. 총회는 늦어도 1주일 전에 공고해야 하며 100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제26조 (총회의 의결)

1. 총회는 임원선출·회칙개정 및 예산, 결산과 그 밖에 상임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을 의결한다.

2. 총회의 의결은 출석체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단, 회칙개정안 및 특별회원 추대안은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상임이사회의 소집) 상임이사회는 연 2회 이상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상임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8조 (상임이사회의 심의)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본 회의 기본 운영방침 및 중요 사업계획

2. 예산안 및 결산

3. 총회소집에 관한 사항

4.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5. 총회에 제출할 의안
6. 회비 및 입회비, 상임이사회비, 각종 분담금의 조정 및 결정
7. 그 밖에 상임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9조 (상임이사회의 의결)

상임이사회는 재적상임이사 1/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 (상임임원회)

1. 상임임원회는 상임임원으로 구성되며 매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상임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단과대학 동문회장을 포함한 확대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회장 직속으로 편집위원회를 두고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31조 (상임임원회의 업무) 상임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결정한다.

1. 상임이사회의 위임 사항
2. 본 회 회무에 관한 사항
3. 본 회 사업 계획 및 재무관리에 관한 사항
4. 회비 및 입회비·상임이사회비·각종 분담금의 조정 및 결정
5. 상임이사 및 이사 호선
6. 조직 활성화를 위한 일 및 모교와의 친선강화를 위한 일
7. 고문 추대에 관한 동의안
8. 회원의 포상 및 징계안
9. 규정의 제정 및 개폐안
10.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

제5장 사무국

제32조 (사무국)

1.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장 재정

제33조 (재무) 본 회의 재정은 세입·세출·예산에 따라 집행한다. 본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빌전성금
2. 연회비 · 이사회비 및 분담금
3. 입회비
4. 특별회사금
5. 그 밖의 수입

제34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7장 장학회 운영

제35조 (장학회) 본회는 제5조 3항에 표시된 장학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숙명여자대학교 동문장학회를 재단법인 숙명여자대학교 동문장학회 정관에 의하여 운영, 관리한다.

제8장 편집위원회

제36조 (편집위원)

1. 본 회는 제5조 1항의 사업 중 본 회 동문회보 및 홍보물 발간을 위하여 10명 이내의 편집위원을 둔다.  
주간 1명, 편집장 1명, 기자 약간 명, 위원 약간 명
2. 본 회 회장단과 총무 1명은 편집위원이 된다.

제37조 (편집위원회의 업무)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 집행한다.

1. 동문회보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2. 동문회 활동, 회원 및 모교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홍보
3. 동문회 명부 제작 및 동문회사 편찬에 관한 사항

## 제9장 상 벌

제38조 (포상) 본 회 또는 모교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회장이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포상할 수 있다.

제39조 (징계) 본 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자에 대하여는 상벌 규정에 따라 이를 징계할 수 있다.

### 상 벌 규 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 총동문회(이하 '본 회'라 한다) 회칙 제9장 상벌, 제38조 및 제39조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2016.12.22.)

(1) 이 개정 회칙은 2016년 12월 22일 본회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9.30.)

(1) 이 개정 회칙은 2021년 9월 30일 본회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회칙 시행으로 2021년 9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회계는 별도로 결산해야 하며, 회장은 위별도 결산에 대하여 감사를 받고 상임이사회 심의 및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이 개정 회칙 시행으로 차기(33대) 회장 선출은 2022년 개최되는 총회에서 하며, 이 개정 회칙 시행 이전에 선임된 회장을 비롯하여 32대 상임임원의 임기는 본 회 회칙 제21조 임원의 임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기 회장 선출 시까지로 단축한다.